對 外 秘

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

2018. 6. 5. 기획조정실

1. 검토 배경

▣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 포착

- 그간 상고법원 추진에 대하여 관망세를 취하던 일부 법관들이 최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면화·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짐

- [반대이유] ①실질적으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CJ의 인사권 등 CJ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+ ②명분상으로 승진보직 신설 등으로 인한 사법부 관료화 심화 우려일 것으로 추정됨

- [핵심그룹]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후에도 교류지속하면서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음 ⇨ 특히 서울고 등 김○○(15기) 부장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- [표면화 배경] ①최근 주요 (보수)언론의 일련의 우호적 보도 및 ②야당 소속 반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 약화 등으로 입법환경상 긍정적 징표 ⇨ 상고법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을 것임

> ☑ 우리법연구회 2015. 5. 정기세미나
>
> ▶ 매월 열리는 정기세미나에서 **상고법원을 주제**로 다룸 ⇨ 국회 법사위 2015. 4. 상고법원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 6개를 참석자가 소개한 후 전체 토론
>
> ▶ 25기 이하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, 31~34기 평판사 8명 총 12명 참석
>
> ▶ 견해가 11 대 1로 갈린 것으로만 알려짐

▣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성

-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**외부로 표출될 경우** ⇨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

- 1외부 반대세력 상대 설득·여론전에 총력을 다해 왔음에도 상당한 반대

세력 엄존함 ⇨ 내부에서까지 반대 목소리 표출될 경우 ①내부 구성원의 큰 동요뿐 아니라 ②**외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이 불가한 상황이 될 수 있음**

- 2특히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음 ⇨ 현재 논의 주도 법관들은 단체행동에 나서본 경험이 있거나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

● **세 결집 자체를 방지할 필요성**

- 1반대세력이 결집된 이후에는 설득 등을 통하여 일응 **무마된 경우에도 향후 다시 문제될 가능성** 높음

- 2외부적 의사 표출 여부와 관계없이 **상고법원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**가 됨

※ 노조 대응전략, 인사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도 상고법원 추진에 불안요소가 될 우려로 인해 각 제도의 검토, 시행과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

- 3핵심 그룹이 법관이어서 소통과 설득을 통해 조기에 오해를 해소하고 **타협점을 찾을 여지** 있으므로, 초기 단계에 대응할 필요성 있음

2. 대응 방안 검토

▣ [전제사항]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

● 반대 법관들의 동향은 아직 첩보 수준 ⇨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1**핵심세력**은 물론 2**움직임의 목적**과 3**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중인 방안**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있음

●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 여부 ⇨ **재야인사** or 야당의 반대 기류에 주된 영향을 미친 **민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파악할 필요**

▣ [1접근방향] 강·온 접근 여부 ⇨ 유화·설득·타협 방안 바람직

● 반대 법관들의 성향 및 핵심 그룹의 무게감에 비추어 **압박으로 느껴질 경우 반발로 인한 단체행동의 도화선이** 될 가능성 있음

● 반대 법관들이 구체적인 단체행동을 목전에 두고 있고, 설득이 어려

운 경우 등에 한하여 압박책 고려함이 타당함

- 비판 내지 문제의식에 대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필요

▣ [2접촉대상] 주변인을 통한 우회적 설득보다는 핵심 그룹 상대 직접 설득 바람직

- 재야인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, 김 부장판사 상대 직접 설득할 필요 있음

- 유력한 지인 등을 통한 우회적 설득으로 ①신중한 언행의 확률을 높이고, ②반대 활동 시기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가능할 것이나,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

- 단계적 접근은 가능할 것임

☑ 상고법원 관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참석하는 내부 세미나 등 우선 활용 방안

▶사법정책연구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을 통해 세미나 등 개최 가능

▶서울고등법원에서 김 부장판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⇨ 다른 법관들의 상고법원 찬성의견을 통해 김 부장판사의 입장에 자연스러운 변화 도모

- 단, 확률이 높지 않고, 특히 반대 움직임의 배경에 김 부장판사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

▣ [3접촉주체]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설 필요 있음

- ①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접촉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는 것에 별다른 부담 없음

- ②직접 설득하지 아니할 경우 핵심 그룹 입장에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음

- 행정처 실장급 이상

▣ [4접촉시기] 현황 파악 즉시 시행

-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제적 대응 필요하고 미룰 이유 없음

▣ [5설득수단 및 논리] ⇨ 추가 검토 필요

- 진솔한 접근과 의견교환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

- 사법부 현안에 관한 내부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의 장을 연 것이고, 특정 세력을 상대로 한 압박절차가 아님을 설명
- 법률안 발의 이후 수정, 보완된 내용을 중점 설명 ⇨ CJ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적극 수용하여 권한을 대폭 내려놓으려는 입장임을 소개

- ex)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대안 제시 등